# 국가대표 선발규정

제정 2015. 1. 16. 개정 2018. 1. 18.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

- ② 국가대표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른 대한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또는 "대한유도회"(이하 "본회"라 한다)가 국제대회 (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)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·확정한 사람을 말한다.
- ③ 제2항의 국가대표선수에는 "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"(이하 "강화훈련" 이라 한다)에 참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
- ④ 국가대표지도<u>자는</u> 국가대표 훈련기간 동안 국가대표선수를 지도·관리하기 위해 체육회 또는 본회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<u>본회에서 실시하는 종별</u>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<u>하여</u>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제4조(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) ①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<u>와</u> 지도자는 본<u>회</u>에서 선발하되, <u>본회의 회장이</u> 추천<u>하여</u> 체육회의 승인을 <u>받으면</u> 국가 대표의 자격을 갖는다. ②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<u>본회</u>에 의하여 국제대회에 파견 <u>되는</u> 선수<u>와</u> 지도자는 <mark>본회의</mark>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유도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.

#### 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.

- 1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-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3. 체육회 및 본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않은 사람
- 4.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<u>징계 처분을</u>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<u>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</u> 사람. 다만,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<u>사람은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</u> 없다.
- 5.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<u>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</u> 자격정지 <u>의 징계처분을</u>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<u>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</u> <u>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(다만,</u>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<u>사람은</u> 영구<u>히 국가</u> 대표가 될 수 없다)
- 6. 체육회 및 <u>본회에서 승부조작, 불공정 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, 국가대표훈련비 횡령)</u>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<u>받은 사람</u>
  - 7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

**제6조(성실의무 및 품위유지)**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,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한다.

### 제2장 경기력향상위원회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본회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- 1.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
- 2. 강화훈련의 실시, 국가대표에 대한 지도, 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- 3.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한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1. 위원장 1명
- 2. 부위원장 약간 명
- 3. 위원 5명 이상 13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1명, 지도자 1명, <u>등록팀</u> 관계자 1명, <u>시·도</u> 종목단체 임원 1명, 비경기인 1명, 여성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특성에 따라 세부종목 또는 남녀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요건)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- ② 회장과 친족인 사람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본회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**제10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<u>대신</u>할 수 없다. 다만, 선수의 부상,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종목별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,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, 국제기구 진출 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지도자

제12조(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)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.

② 국가대표지도자를 임용 <u>또는</u> 재임용<u>할 때에는</u> 해당 지도자<u>에 대한</u> 평가 보고서를 작성<u>하여</u> 위원회의 <u>평가와 추천을</u>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13조(국가대표지도자의 임기 및 역할) ① 국가대표지도자의 신분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<u>1년</u> 이상의 임기(계약기간)를 보장하여야 한다. ② 국가대표 감독은 코치 및 선수 선발 선임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감독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.

제14조(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)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국가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
- 2.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
- 3. 훈련참가 국가대표선수 선발 참여
- 4.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 건의
- 5.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
- 6.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 결과 보고
- 7.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, 감독
- 8.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

제15조(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선발기준) ①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, 감독은 5년 이상, 코치는 2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경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올림픽메달리스트는 경력과 상관없이 회원종목단체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체육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지도 경력 또는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.

- ③ 트레이너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 및 지도경력을 반드시 요하지는 않으나,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발기준 적용에 있어 외국 국적 지도자 선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### 제4장 선수

제16조(국가대표선수 선발) 제16조(국가대표선수 선발) ① 국가대표선수는 본회가 사전에 정한 <u>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</u> 하며, 선발일정 등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- ② 본회의 국가대표선수 선발 기준은 선발일 3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본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유도연맹의 대회 관련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 이때 선발기준 공지 지연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선수의 지도자 등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④ 제1항의 위원회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훈련 참가선수의 선발) ①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는 본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하고, 본회 회장의 추천으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외의 국가대표선수는 본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하고,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.

- 제18조(<u>강화훈련 참가선수의</u> 선발기준) ① 해당연도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의 선발은 최소 연 1회 이상의 정기선발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부상, 경기력 부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따른 선수 교체 시 감독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, 선발전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상위성적 선수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 또는 지도자 추천에 의한 선발은 최소화하며,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④ 국가대표로 <u>선발된 선수를</u> 소속팀으로부터 <u>차출할 경우</u> 해당 선수의 원 소속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선발기준에는 선발방식, 선발일정, 추천선발의 요건, 비율 및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사전에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한다.
- ⑤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(선발전 성적, 연간 대회성적에 기반한 순위 등)를 근거로 선발하여야 한다.
- ⑦ 추천선발 인원은 총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나, 단체전의 경우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.
- <u>⑧ 추천된 선수는 추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(대회성적, 향상</u>도, 위원회 회의록 등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국가대표 선발 검증 강화) ① 강화훈련 참가 및 국제대회 파견 선수 명단은 확정 즉시 선발사유를 적시하여 본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② 국가대표 명단 공개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하고, 이의신청 내용은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5장 보칙

제20조(불공정 행위) ① 국가대표 <u>선발과 관련한</u> 불공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 등)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.

② 기준 미달자 등 부정 선발된 선수는 즉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.

제21조(국가대표선발규정 제·개정) ① 본회는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본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.

- ② <u>본회가 국가대표 선발규정을</u> 제·개정<u>한 경우에는 그 즉시 제·개정한 규정</u>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본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제·개정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내에 제·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.

제22조(자료의 보관) 국가대표 선발기준, 과정,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,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 (선발결과 기록지, 분석지, 및 회의록 등)는 최소 5년간 보관(관리)하여야 한다.

제23조(훈련의 관리) 국가대표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'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'을 적용하여 시행한다.

# 부칙(2015. 1. 16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5.01.16)

**제2조(경과조치)** 제5조(결격사유)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 또는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
# 부칙(2017. 1. 18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(2017.01.18)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(구)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